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의원발의 관계기관 검토의견

※ 담당자 : 강서구(문화체육과 오세웅 02-2600-6634)

의원발의 조례	검 토 의 견	
	수 정 안	사 유
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: ..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조례」 제5조	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: ..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」 <u>제2조</u> 및 제5조	- 청년의 정의 및 문화에 관련한 정책, 단체 활동, 시설 등의 참여확대, 권익 증진, 청년발전 등을 규정한 제2조를 참고사항 조항에 추가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청년”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...“청년”이란 <u>만 19세</u> 이상 39세 이하까지... 에 <u>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</u> 을...	- 청년지원 정책 범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조례」에 규정된 청년의 정의 나이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례안 수정 필요 - 강서구민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‘주민등록을 두고 있는...’을 명기 필요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 청년...	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청년...	보조사 추가